

●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1-30호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, 제2014-119호(2014.3.27.) 및 제2019-185호(2019.06.07.)로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-111호(2017.11.22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처리하고,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.

2021년 3월 17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명칭 및 종류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310-2번지 일대 / 5,621.57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 명 : 더유니스타제삼차(주) 대표 박래영
 -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, 214호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일로부터 54개월
5. 사업시행인가일 : 2017.11.22.
6. 변경내용 및 사유
 - 변경내용 : 건축물 주용도 변경[공동주택(아파트) → 업무시설(오피스텔)+공동주택(도시형생활주택)] 등
 - 변경사유 : 원활한 사업시행
7. 관계도서 :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02-3396-5753)에 비치